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1. 예산안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1회추경예산	증 감	
			금 액	증감율(%)
총 계	167,016,347	171,811,370	△4,795,023	△2.79%
일 반 회 계	155,471,432	152,241,394	3,230,038	2.12%
특 별 회 계	11,544,915	19,569,976	△8,025,061	△41.01%
의료보호기금	362,756	209,756	153,000	72.94%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 기금	1,528,450	1,528,450	0	0.00%
주 차 장	5,390,804	5,360,199	30,605	0.57%
주거환경개선사업	249,042	254,292	△5,250	△2.06%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3,427,586	3,417,006	10,580	0.31%
홍 티 마 을 공 영 개 발 사 업	586,277	8,600,273	△8,013,996	△93.18%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 설 대 지 보 상	-	200,000	△200,000	△100.00%

2. 일반회계

□ 세입예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1회추경예산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계	155,471,432	100.00%	152,241,394	100.00%	3,230,038	2.12%
지 방 세	19,786,000	12.74%	19,336,000	12.70%	450,000	2.33%
세 외 수 입	21,232,273	13.67%	21,410,943	14.06%	△178,670	△0.83%
경상적세외수입	10,975,258	7.07%	11,386,562	7.48%	△411,304	△3.61%
임시적세외수입	10,257,015	6.61%	10,024,381	6.58%	232,634	2.32%
지 방 교 부 세	7,635,118	4.92%	7,952,063	5.22%	△316,945	△3.99%
조 정 교 부 금 및 재 정 보 전 금	30,358,934	19.55%	30,021,764	19.72%	337,170	1.12%
보 조 금	76,459,107	49.18%	73,520,624	48.29%	2,938,483	4.00%
국고보조금	44,359,719	28.53%	42,880,486	28.17%	1,479,233	3.45%
시비보조금	32,099,388	20.67%	30,640,138	20.13%	1,459,250	4.76%
지 방 채	-	0.00%	-	0.00%	0	

□ 세출예산내역

○ 기능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1회추경예산	구성비	증 감	
					금 액	증감율(%)
계	155,471,432	100.00%	152,241,394	100.00%	3,230,038	2.12%
일반행정비	42,603,477	27.44%	42,811,477	28.12%	△208,000	△0.49%
사회개발비	98,459,414	63.33%	95,724,303	62.88%	2,735,111	2.86%
경제개발비	11,892,503	7.66%	10,780,392	7.08%	1,112,111	10.32%
민방위비	291,844	0.19%	321,780	0.21%	△29,936	△9.30%
지원 및 기타경비	2,224,194	1.43%	2,603,442	1.71%	△379,248	△14.57%

○ 성질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1회추경예산	구성비	증 감	
					금 액	증감율(%)
계	155,471,432	100.00%	152,241,394	100.00%	3,230,038	2.12%
경상경비	52,401,639	33.75%	52,874,390	34.73%	△472,751	△0.89%
사업예산	99,568,530	64.04%	95,281,493	62.59%	4,287,037	4.50%
채무상환	337,100	0.22%	337,100	0.22%	-	0.00%
예비비등	3,164,163	2.04%	3,748,411	2.46%	△584,248	△15.59%

○ 품목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1회추경예산	구성비	증 감	
					금 액	증감율(%)
계	155,471,432	100.00%	152,241,394	100.00%	3,230,038	2.12%
인건비	37,347,518	24.05%	36,978,755	24.29%	368,763	1.00%
물건비	10,133,166	6.52%	10,478,528	6.88%	△345,362	△3.30%
이전경비	84,402,608	54.29%	82,279,315	54.05%	2,123,293	2.58%
자본지출	20,244,402	13.02%	18,581,810	12.21%	1,662,592	8.95%
보전재원	290,000	0.19%	290,000	0.19%	0	0.00%
내부거래	1,166,644	0.75%	1,366,644	0.90%	△200,000	△14.63%
예비비 및 기타	1,887,094	1.22%	2,266,342	1.49%	△379,248	△16.73%

□ 주요증감내역	-----	3,030백만원
○ 필수 경비	-----	△25백만원
○ 경상 경비	-----	△448백만원
○ 경상투자사업비	-----	△285백만원
○ 투자사업비	-----	1,350백만원
○ 기타 재료비 등	-----	△232백만원
○ 기금적립 등	-----	△205백만원
○ 국·시비 보조사업(경상)	-----	△3,254백만원
○ 예비비	-----	△379백만원

□ 명시이월사업(22건) ----- 6,417백만원

○ 구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선수 부상자 치료비	11백만원
○ 전자교통카드 결재용 단말기 설치	20백만원
○ 소규모요양시설 신축	760백만원
○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30백만원
○ 신평1동 쌈지공원 조성	207백만원
○ 자율관리어업지원사업	80백만원
○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140백만원
○ 방치폐선처리사업	14백만원
○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 어업인 지원사업	17백만원
○ 장림2동 영남중학교주변 도로개설	60백만원
○ 괴정3동 삼경맨션일원 도로개설 (고지대 주거환경복지사업비)	20백만원
○ 다대포 해안도로개설	997백만원
○ 괴정3동 복개천~화신아파트간 도로개설	325백만원
○ 낙동강하류 강변대로변 철책망 철거	250백만원
○ 다대초등학교앞 육교설치	500백만원
○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50백만원
○ 지적불부합지 정리 및 손실보상	8백만원
○ 다대동 삼미매립지 동측 침식방지사업(3차)	1,476백만원
○ 다대포해수욕장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96백만원
○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62백만원
○ 장림동 은항교회 주변 하수도정비공사	114백만원
○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880백만원

3.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 천원)

구 분		계	경 상 적 세 외 수입	임 시 적 세 외 수입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계	예 산 액	11,544,915	2,100,515	7,027,357	262,400	2,154,643
	제1차추경예산	19,569,976	10,078,979	7,226,954	140,000	2,124,043
	증 감 액	△8,025,061	△7,978,464	△199,597	122,400	30,600
의료보호 기 금	예 산 액	362,756	400	27,813	262,400	72,143
	제1차추경예산	209,756	400	27,813	140,000	41,543
	증 감 액	153,000	0	0	122,400	30,600
주 차 장 외 6건	예 산 액	11,182,159	2,100,115	6,999,544	0	2,082,500
	제1차추경예산	19,360,220	10,078,579	7,199,141	0	2,082,500
	증 감 액	△8,178,061	△7,978,464	△199,597	0	0

○ 세출예산

(단위: 천원)

구 분		계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등
계	예 산 액	11,544,915	1,469,269	6,410,014	3,665,632
	제1차추경예산	19,569,976	1,534,669	14,461,010	3,574,297
	증 감 액	△8,025,061	△65,400	△8,050,996	91,335
의료보호 기 금	예 산 액	362,756	26,384	308,159	28,213
	제1차추경예산	209,756	26,384	155,159	28,213
	증 감 액	153,000	0	153,000	0
주 차 장 외 6건	예 산 액	11,182,159	1,442,885	6,101,855	3,637,419
	제1차추경예산	19,360,220	1,508,285	14,305,851	3,546,084
	증 감 액	△8,178,061	△65,400	△8,203,996	91,335

명시이월사업(3건)

----- 1,616백만원

- 감천1동 스위스제과점옆 가각 정비 공사 _____ 90백만원
- 괴정4도 괴정천복개도로 주변 주택진입 도로개설 _____ 106백만원
- 산업단지내 공영주차장 설치 _____ 1,420백만원

4. 검토의견

가. 예산안총괄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670억 1,634만 7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54억 7,143만 2천원,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 115억 4,491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나. 일반회계

〈세입분야〉

-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554억 7,143만 2천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410억 1,827만 3천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76억 3,511만 8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03억 5,893만 4천원, 국·시비 보조금이 764억 5,910만 7천원 등으로 편성되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2%인 32억 3,003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내용을 보면 세입재원별 목표액 초과와 미달된 세입예산을 가감 정리하면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도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 세부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사업소세 및 과년도수입의 증가로 인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이 줄어들에 따라 4억원 감소되었으나, 이는 당초 본 예산편성시 세입예측을 잘못 판단한 결과라 사료됩니다.
- 임시적 세외수입은 올해 매각 예정이었으나, 처분하지 못한 “승학어린이집” 등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3억 9천 3백만원과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이 2억 4천 7백만원 등이 1회추경대비 각각 감소되었으나, 인건비 등 충당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수금수입 7억원과 체납세징수 등 과년도수입 2억원 등이 늘어나 전체로는 2억 3천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 지방교부세 중 다대초등학교앞 육교설치 등 특별교부세가 10억원 증액되었으나, 2005년 부동산세제개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세수감소분을 보전하면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재산세 부족분 46억 8,300만원과 금년도 3월, 기 교부받은 정산분 11억 3,200만원 등 종합부동산세교부금을 58억 1천 5백만원 편성함으로써 1회추경 대비 13억 1,700만원이나 삭감시켰습니다. 이는 당초 정보 부재와 충분한 견적없이 세입을 과다하게 책정한 결과라 사료됩니다. 조정교부금은 신평1동쌈지공원 조성특별교부금과 강변대로 철책망 철거 및 대체시설 신설 특별교부금 등으로 총 3억 5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 국·시·비보조금은 총 764억 5,910만원으로서 국비보조금중에는 교육급여, 일반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보육료, 장애수당 등이 늘어났고, 긴급복지지원, 자활근로사업비 등은 감소되어, 국비보조금은 전체 14억 7,923만 3천원 늘어났으며, 국고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도 14억 5,925만원이 1회추경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554억 7,143만 2천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426억 347만 7천원, 사회개발비 984억 5,941만 4천원, 경제개발비 118억 9,250만원, 민방위비 2억9,184만 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22억 2,419만 4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경비의 과부족분을 가감정리하고 경상비 절감예산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정리하였으며, 도로개설사업의 마무리 등 주민숙원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 성질별로 경상적경비는 1회추경예산 대비 4억 7,275만 1천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 등도 5억 8,424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사업예산은 42억 8,703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를 다시 품목별로 보면, 기본경비인 인건비는 3억 6,876만원이 증액된 반면 일반운영비인 물건비는 3억 4,53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민간단체보조금 등 이전경비 21억 2,329만 3천원과 시설비 등의 자본지출 16억 6,259만 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적립금전출금 등 내부거래와 예비비등은 1회추경 대비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분야별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필수경비인 공무원 인건비는 3억 6,900만원

증액되었으나 공무원연금·퇴직·재해부담금 등을 비롯하여 의정운영공통업무 추진비, 의원상해부담금, 공무원기본업무수행여비, 공무원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 경상경비는 구민대축제경비, 공무원해외배낭여행비, 도로조명시설 공공요금, 문화회관전기료, 구청사공공요금, 기타경상비 등에서 1회추경대비 4억 4,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경상투자비로는 도로굴착복구비 2억 6,800만원이 감소되었고, 투자사업비는 특별교부세로 다대초등학교앞 육교설치 5억원, 괴정3동북개천~ 화신아파트간 도로개설 5억원, 낙동강하류강변대로변철책망 철거 2억 5천만원 등이 각각 신설·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 청소행정분야에서 당초 민간기업에서 처리예정이던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처리비 2억 2,100만원을 사하F·R센터에서 처리함으로써 삭감하였고, 대신 사하F·R센터 위탁운영비는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또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의로 전출예정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및 구 부담금은 1회추경 대비 32억 5천4백만원 증가되고 예비비는 3억 7,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2006년도에 시행완료하지 못하고 2007년으로 이월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22건에 64억 1,7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다대포항 해안도로개설 9억 9천 7백만원, 다대동 3차삼미매립지 동측침식방지사업 14억 7천 6백만원, 신평1동 쌈지공원조성사업 2억 7백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8억 8천만원, 다대초등학교앞 육교설치 5억원, 소규모요양시설 신축비 7억 6천만원 등이 올해 시행완료 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이는 절대공기부족과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지연 또는 교부금 등이 늦게 배정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편의와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 올해는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사업비를 절감한 잔여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부서별로 가감이 삭감하여 인건비 등 부족분에 충당하였습니다 만 각 부서별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선래 답습적으로 과다 계상하여 불용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향후 구재정사항 등을 감안 한정된 세입재원을 적재적소의 사업에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편성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특별회계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등 6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115억 4,491만

5천원으로 올해 1회추경보다 80억 2천 5백만원인 41.01%가 감소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1억 5천 3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천 1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천만원 등이 늘어났으나 흥터마을공영개발사업 80억 1천 4백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출예정이었으나 구재정사항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2억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백만원 등도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 특별회계의 명시이월된 사업으로는 산업단지내 공영주차장설치 14억 2천만원 등 총 3건의 16억 1천 6백만원입니다
-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등 세입재원별 목표액 초과와 미달된 세입예산을 가감정리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액 정리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과 계획절감 부분 및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삭감 정리하여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경기위축과 세계 개편 등으로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할 때 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판단되나, 가용재원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 끝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칙 제7조의 “본 추경 후 2006년 12월31일까지 내시되는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은 예산승인(명시이월)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한다” 는 조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연도 세입 세출로 편성심의 하여야 하나 심의일정 편성이 불가능하므로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후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